

성공회대학교 2017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2015.04.30.)

■차 례■

1. 모집인원	2
가. 입학정원	2
나. 2017학년도 모집 시기별 모집 인원 요약	2
다. 2017학년도 수시 모집 인원(정원 내)	3
라. 2017학년도 수시 모집 인원(정원 외)	4
마. 2017학년도 정시 모집 인원(정원 내)	5
2. 2016학년도 대비 2017학년도 전형 변경 사항	6
3. 전형요소별 반영 비율	7
가. 수시 모집-학생부위주(교과)	7
나. 수시 모집-학생부위주(종합)	8
다. 정시 모집-수능위주	8
4. 전형요소별 반영 방법	9
가. 학생부 반영 방법(수시 모집)	9
나. 학생부 교과성적 세부 반영 방법(수시 모집)	10
다. 면접 반영 방법	13
라. 기타(서류) 반영 방법	13
마. 수능 성적 반영 방법	14
5. 전형유형별 지원 자격	16
가. 수시 모집(정원 내)	16
나. 수시 모집(정원 외)-학생부위주(교과)	19
다. 정시 모집(정원 내)-수능위주	20



성공회대학교 개교 100주년

SEUNGKONGHOE UNIVERSITY THE 100th ANNIVERSARY

1. 모집인원

가. 입학정원

계열	모집단위	입학정원 (주간)	2017학년도 이월인원	모집인원 계	비고
인문사회	신학과	28	1	29	
	영어학과	37		37	
	일어일본학과	37		37	
	중어중국학과	33		33	
	사회복지학과	47		47	
	사회과학부	70		70	
	신문방송학과	37		37	
	경영학부	37		37	
공학	디지털컨텐츠학과	37		37	
	컴퓨터공학과	37		37	
	소프트웨어공학과	37	1	38	
	정보통신공학과	37	1	38	
	글로벌IT학과	28		28	
합계인원:		502	3	505	

*미충원 이월 승인 인원 및 수시 미충원 이월 인원은 정시 모집에 반영하여 모집.

나. 2017학년도 모집 시기별 모집 인원 요약

구분	수시		정시 (정원 내)	계 (정원 내+정원 외)
	정원 내	정원 외		
인원(명)	377명 (70.20%)	27(5.5% 이내)+ 5(1% 이내)	128명 (23.84%)	537명

다. 2017학년도 수시 모집 인원(정원 내)

모집 군	수시						
	학생부위주(종합)		학생부위주(교과)				
전형명(대)	일반전형	대학별독자적기준	대학별독자적기준			고른기회대상자(정원내)	
전형명(중)	일반학생	대안학교출신자	교과성적(내신) 우수자	교과성적(내신) 우수자	사회배려대상자 (사회기여, 봉사등)	국가보훈대상자	특성화고교 졸업자
전형명 (대학사용명칭)	열린인재	대안학교출신자	교과성적우수자	지역인재	사회기여자및 배려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특성화고교 졸업자
신학과	12	2	5	2	1	1	
영어학과	11	4	10	2		1	
일어일본학과	13	2	12	1			
중어중국학과	11	2	10	1	1		
사회복지학과	15	6	15				
사회과학부	18	12	17	2	4		
신문방송학과	11	5	10	2			
경영학부	11	3	11	2	1		
디지털컨텐츠학과	12		11		1		4
컴퓨터공학과	12		12				2
소프트웨어공학과	12		12		1		2
정보통신공학과	15		10				2
글로벌IT학과	9	2	9				
소계	162	38	144	12	9	2	10
모집군별 인원	377						

라. 2017학년도 수시 모집 인원(정원 외)

모집 군	수시 (정원 외)			
전형유형	학생부위주(교과)			
전형명(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 졸업자	416 세월호 특별법
전형명(중)	저소득층 (기회균형선발)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 졸업자	단원고 특별전형
전형명 (대학사용명칭)	저소득층 (기회균형선발)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 졸업자	단원고 특별전형
신학과				5
영어학과	1	2		
일어일본학과		2		
중어중국학과		2		
사회복지학과	1	2		
사회과학부	1	2	2	
신문방송학과	1	3		
경영학부	1	2	2	
디지털컨텐츠학과			2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			1	
정보통신공학과				
글로벌IT학과				
소계	5	15	7	
모집군별 인원	32			



마. 2017학년도 정시 모집 인원(정원 내)

모집 군	정시 나군	정시 다군
전형유형	수능위주	
전형명(대)	일반전형	일반전형
전형명(중)	일반학생	일반학생
전형명 (대학사용명칭)	일반학생(수능)	일반학생(수능)
신학과		6
영어학과		9
일어일본학과	9	
중어중국학과		8
사회복지학과	11	
사회과학부		17
신문방송학과	9	
경영학부		9
디지털컨텐츠학과	9	
컴퓨터공학과		11
소프트웨어공학과	11	
정보통신공학과	11	
글로벌IT학과		8
소계	60	68
모집군별 인원	128	

2. 2016학년도 대비 2017학년도 전형 변경 사항: 전형유형에 따른 구분

구분	전형 유형	주요 전형 요소	2016학년도 전형계획	2017학년도 전형계획
수시	학생부 위주	·학생부 교과 : 교과 중심 ·학생부 종합 : 비교과, 교과, 면접 등 (자기소개서, 추천서 활용 가능)	일반전형-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면접) 대학별독자적기준-대안학교출신자, 학교장/교사추천자, 민주화유공자 손/자녀 사회배려대상자 등, 다문화가정 자녀 고른기회대상자-국가보훈 대상자, 지역인재 정원외 특별전형: 저소득층(기회균형선발),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 졸업자, 단원고 특별전형	대학별독자적기준: 교과성적우수자, 사회기여자 및 배려대상자, 지역인재 고른기회대상자: 국가보훈 대상자, 특성화고교 졸업자 정원외 특별전형: 저소득층(기회균형선발),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 졸업자, 단원고 특별전형 일반전형: 열린인재 대학별독자적기준: 대안학교 출신자
	논술 위주	·논술 등		
	실기 위주	·실기 등 (특기 등 증빙 자료 활용 가능)		
정시	수능 위주	·수능 등	일반학생(수능+학생부), 일반학생(수능)	일반학생(수능)
	실기 위주	·실기 등 (특기 등 증빙 자료 활용 가능)		

- 학생부 종합을 신설 '학생부(교과+면접)'과 '학교장/교사추천자'전형을 통합하여 '열린인재'전형을 둔다.
- '민주화유공자 손/자녀와 사회배려대상자 등'과 '다문화가정 자녀'를 통합하고 자격 기준을 확대하여 '사회기여자 및 배려대상자'로 한다.
- '지역인재'를 학생부 교과의 '고른기회대상자'로부터 '대학별독자적기준' 전형 분류로 변경한다.
- '고른기회대상자' 분류에 '특성화고교 졸업자'전형을 신설한다.

3. 전형요소별 반영 비율

가. 수시 모집-학생부위주(교과)

전형명 (대)	전형명 (대학사용명칭)	선발원칙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최저 학력 기준
				학생부	면접	수능	기타	
대학별독자적기준	교과성적우수자	일괄전형	100%	100%				없음
대학별독자적기준	사회기여자 및 배려대상자	일괄전형	100%	100%				없음
대학별독자적기준	지역인재	일괄전형	100%	100%				없음
고른기회대상자(정원 내)	국가보훈대상자	일괄전형	100%	100%				없음
고른기회대상자(정원 내)	특성화고교 졸업자	일괄전형	100%	100%				없음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정원 외)	저소득층(기회균형선발)	일괄전형	100%	100%				없음
농어촌학생(정원 외)	농어촌학생	일괄전형	100%	100%				없음
특성화고교졸업자(정원 외)	특성화고교졸업자	일괄전형	100%	100%				없음
416세월호 특별법(정원 외)	단원고 특별전형	일괄전형	100%	100%				없음

나. 수시 모집-학생부위주(종합)

전형명 (대)	전형명 (대학사용명칭)	선발원칙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최저 학력 기준
				학생부	면접	수능	기타	
일반전형	열린인재	1단계	500%				서류 100%	없음
		2단계	100%		50%		50% (1단계)	없음
대학별독자적기준	대안학교 출신자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없음

*1단계 서류 반영 방법: 학생부(교과+비교과), 자기소개서를 활용하여 인성(성실성), 전공적합성, 학업성취가능성 등 종합 평가

다. 정시 모집-수능위주

전형명 (대)	전형명 (대학사용명칭)	선발원칙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최저 학력 기준
				학생부	면접	수능	기타	
일반전형	일반학생(수능)	일괄전형	100%			100%		없음
일반전형	일반학생(수능)	일괄전형	100%			100%		없음

4. 전형요소별 반영 방법

가. 학생부 반영방법(수시 모집)

전형명 (대)	전형명 (대학사용명칭)	반영교과	적용대상 졸업연도	학년별 반영 비율	요소별 반영 비율		활용지표
					교과성적	출결상황	
대학별독자적기준	교과성적우수자	지정 교과	2015.2- 2017.2	전학년 공통 100%	100%	반영안함	석차등급
대학별독자적기준	사회기여자 및 배려대상자	지정 교과	2015.2- 2017.2	전학년 공통 100%	100%	반영안함	석차등급
고른기회대상자(정원 내)	국가보훈대상자	지정 교과	2015.2- 2017.2	전학년 공통 100%	100%	반영안함	석차등급
고른기회대상자(정원 내)	지역인재	지정 교과	2015.2- 2017.2	전학년 공통 100%	100%	반영안함	석차등급
고른기회대상자(정원 내)	특성화고교 졸업자	전체 교과	2015.2- 2017.2	전학년 공통 100%	100%	반영안함	석차등급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정원외)	저소득층(기회균형선발)	전체 교과	2015.2- 2017.2	전학년 공통 100%	100%	반영안함	석차등급
농어촌학생(정원외)	농어촌학생	전체 교과	2015.2- 2017.2	전학년 공통 100%	100%	반영안함	석차등급
특성화고교졸업자(정원외)	특성화고교졸업자	전체 교과	2015.2- 2017.2	전학년 공통 100%	100%	반영안함	석차등급
416세월호 특별법(정원외)	단원고 특별전형	전체 교과	2016.2- 2017.2	전학년 공통 100%	100%	반영안함	석차등급

* 학생부 교과성적 반영에서 가중치 및 가산점의 적용은 없음

나. 학생부 교과성적 세부 반영 방법(수시 모집)

전형명 (대)	전형명 (대학사용명칭)	반영교과	반영교과 세부사항	활용지표	학년별 반영 비율
대학별독자적기준	교과성적우수자	지정 교과	국어·영어·수학·사회(또는 과학) 교과별 상위 3과목 (총 12과목)	석차 등급	전학년 100%
대학별독자적기준	사회기여자 및 배려대상자				
고른기회대상자(정원 내)	국가보훈대상자				
고른기회대상자(정원 내)	지역인재				
고른기회대상자(정원 내)	특성화고교 졸업자	전체 교과	석차 등급을 반영할 수 없는 과목은 반영하지 않음	석차 등급	전학년 100%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정원외)	저소득층(기회균형선발)				
농어촌학생(정원외)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졸업자(정원외)	특성화고교졸업자				
416세월호 특별법(정원외)	단원고 특별전형				

1) 지정 교과 반영 방법

가) 최고점과 최저점

구분	최고점	최저점	기본점수	비고
점수	500	356	144	



나) 반영과목의 석차 등급에 따른 점수 반영 기준표

등급별 반영점수표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반영 점수	12	10	9	8	7	6	4	2	0
	상위 등급과의 점수차	-	2	1	1	1	1	2	2	2

다) 반영 과목 점수 계산 예시

■ 반영 과목이 모두 1등급인 경우

구분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반영 과목 점수 계	기본 점수	총점
등급	1	1	1	1	1	1	1	1	1	1	1	1			
반영 점수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44	356	500

■ 반영 과목이 다른 경우

구분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반영 과목 점수 계	기본 점수	총점
등급	2	3	1	2	2	2	3	2	1	1	2	3			
반영 점수	10	9	12	10	10	10	9	10	12	12	10	9	123	356	479

2) 전체 교과 반영 방법

가) 계산식: 기본점수(300점)+[(9-반영과목의 평균등급)/8]*(만점점수-기본점수)

나) 학생부 석차 등급 평균점이 '1'인 경우의 계산 결과 예시: 300+[(9-1)/8]*(500-300)=500

3) 학생부 없는자의 교과성적 반영방법

전형명 (대)	전형명 (대학사용명칭)	전형대상	반영방법
대학별독자적기준	교과성적우수자*	해당없음	해당없음
대학별독자적기준	사회기여자 및 배려대상자*	해당없음	해당없음
고른기회대상자(정원 내)	국가보훈대상자*	해당없음	해당없음
고른기회대상자(정원 내)	지역인재*	해당없음	해당없음
고른기회대상자(정원 내)	특성화고교 졸업자*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정원외)	저소득층(기회균형선발)	1. 2015년 2월 이전 졸업자 2. 교과교육 소년원의 고교과정 이수자 3. 검정고시 출신자 4. 일반계 고교 직업과정 위탁생 5. 공업계 2+1체제 이수자	모집단위 별 지원자의 평균점을 반영함.(단, 검정고시 출신자는 아래의 기준표에 따름)
농어촌학생(정원외)	농어촌학생*	해당없음	해당없음
특성화고교졸업자(정원외)	특성화고교졸업자*	해당없음	해당없음
416세월호 특별법(정원외)	단원고 특별전형	1. 검정고시 출신자	검정고시 점수 반영 기준표에 따름

*우리 대학이 지정하는 학생부 교과 점수 반영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할 수 없음

▶ 검정고시 점수 반영 기준표

평균 점수 구간	100~97.00	96.99~94.00	93.99~90.00	89.99~85.00	84.99~80.00	79.99~75.00	74.99~70.00	69.99~65.00	64.99이하
환산 등급	1	2	3	4	5	6	7	8	9

다. 면접 반영 방법

모집시기	전형유형	전형명 (대)	전형명 (대학사용명칭)	면접 기준	면접 방법
수시	학생부위주(종합)	일반전형	열린인재	학과 전공관심도 (전공이해, 학습계획)와 수학능력(이해력, 논리력)을 5단계로 정성 평가	수험생 1명을 2명의 평가위원이 면접
수시	학생부위주(종합)	대학별독자적기준	대안학교 출신자		

라. 기타(서류) 반영 방법

모집시기	전형유형	전형명 (대)	전형명 (대학사용명칭)	전형자료	반영방법
수시	학생부위주(종합)	일반전형	열린인재	자기소개서	학생부(교과+비교과), 자기소개서를 활용하여 인성(성실성), 전공적합성, 학업성취 가능성 등 종합평가
수시	학생부위주(종합)	대학별독자적기준	대안학교 출신자		

*학생부 온라인 제출이 불가능 비인가 대안학교는 졸업(예정)증명서, 인가서, 학교 소개서를 받아 보완함.

마. 수능 성적 반영 방법

1)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모집시기	전형유형	전형명 (대)	전형명 (대학사 용명칭)	모집단위	수능 성적 활용 지표	반영 영역수	수능영역별 반영비율(100%)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사/과/ 직	제2 외국어 / 한문
가/나											
정시(나)	수능위주	일반전형	일반학생	일어일본학과	백분위	3	(33.3)	(33.3)	33.3	(33.3)	(33.3)
				사회복지학과, 신문방송학과,	백분위	3	(33.3)	(33.3)	33.3	(33.3)	
정시(나)	수능위주	일반전형	일반학생	디지털컨텐츠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백분위	3	(33.3)	(33.3)	33.3	(33.3)	
정시(다)	수능위주	일반전형	일반학생	영어학과, 중어중국학과,	백분위	3	(33.3)	(33.3)	33.3	(33.3)	(33.3)
				신학과, 사회과학부, 경영학부	백분위	3	(33.3)	(33.3)	33.3	(33.3)	
정시(다)	수능위주	일반전형	일반학생	컴퓨터공학과, 글로벌IT학과	백분위	3	(33.3)	(33.3)	33.3	(33.3)	

*인문계(사회계)와 공학계: 영어(33.3%, 기본 반영) + 국어 또는 수학 또는 탐구(점수가 높은 두 영역 각 33.3%, 탐구 영역은 1개만 반영)

*인문계(어학계): 영어(33.3%, 기본 반영) + 국어 또는 수학 또는 탐구(점수가 높은 두 영역 각 33.3%, 단 탐구영역의 범위에 제2외국어 또는 한문 선택 가능, 탐구 영역은 1개만 반영)

*2017 수능시험 방법의 변화를 반영(국, 수, 영 A/B형 폐지 후 국어는 통합, 수학은 가/나형으로 변경, 한국사 필수 지정 영역)

2) 가산점 부여 방법

모집시기	전형유형	전형명 (대)	전형명 (대학사용 명칭)	모집단위	가산부여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	제2외 국어/ 한문
						가	나				
정시(나)	수능위주	일반전형	일반학생	일어일본학과, 사회복지학과, 신문방송학과							
정시(나)	수능위주	일반전형	일반학생	디지털컨텐츠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20%	10%				
정시(다)	수능위주	일반전형	일반학생	신학과, 영어학과, 중어중국학과, 사회과학부, 경영학부							
정시(다)	수능위주	일반전형	일반학생	컴퓨터공학과, 글로벌IT학과		20%	10%				

3) 한국사 반영 방법: 가산점 부여

한국사 등급	1~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적용 가산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4) 점수 반영 계산 예시

영어	+	국어/수학*/탐구 중 1과목	+	국어/수학*/탐구 중 1과목	+	한국사	=	최대 500점
백분위 점수*0.33		백분위 점수*0.33		백분위 점수*0.33		가산점		

*'수학' 선택의 경우 위의 계산 예시에서 '수학의 백분위 점수'에 '가산점'을 부여한 후 계산 예시에 적용합니다.

*'수학' 선택자의 가산점 계산 방법: 백분위 점수*1.2(20% 가산점 부여자) 또는 백분위 점수*1.1(10% 가산점 부여자)

5. 전형유형별 지원 자격

가. 수시 모집(정원 내)

1) 학생부 위주(교과)

전형명 (대)	전형명 (대학 사용 명칭)	지원 자격	고교 구분					졸업 가능여부
			일반 고/ 자율 고	특목 고	특성 화고	국외	검정 고시 등 학력 인정	
대학별 독자적 기준	교과 성적 우수자	2015년 2월 이후 국내 일반고교, 특목고 졸업(예정)자로서, 우리 대학 기준의 학생부 교과 12 과목의 석차 등급 평균 점수 반영이 가능한 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예술고, 체육고, 방송통신고, 학력인정고, 일반/종합고의 전문계반(학과), 학생부 성적 체계가 다른 고교 졸업자 제외	○	○	×	×	×	3수생
대학별 독자적 기준	사회 기여자 및 배려 대상자	2015년 2월 이후 국내 일반고교, 특목고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해당자 및 손/자녀 2.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제 1호부터 3호에 의거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한 5.18 민주화 운동 공헌자 본인 및 손/자녀 3.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거 행정자치부에서 인정한 제주 4.3 항쟁 희생자의 손/자녀 4. 15년 이상 장기 근무한 군인, 경찰, 소방, 교정공무원(순직자 포함) 자녀 5. 환경미화원, 집배원 자녀 6. 북한이탈주민 자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및 자녀)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8. 다자녀 가정 자녀(3명 이상) 9. 한부모 가정 자녀 10. 아동복지시설 입소자 11. 사회봉사자(사회봉사 분야 표창 받은 자) 12. 선, 효행자(선, 효행 분야 표창자) 13. 장애인 가정 자녀(부모 중 1인 이상 장애등급 3등급 이내) 14. 의사상자 자녀(의사상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해당자 자녀)	○	○	×	×	×	3수생

전형명 (대)	전형명 (대학 사용 명칭)	지원 자격	고교 구분					졸업 가능 여부
			일반 고 / 자율 고	특목 고	특성화 고	국외	검정 고시 등 학력 인정	
대학별 독자적 기준	지역 인재	2015년 2월 이후 국내 일반고교, 특목고 졸업(예정)자로서, 우리 대학 기준의 학생부 교과 12 과목의 석차 등급 평균 점수 반영이 가능한 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예술고, 체육고, 방송통신고, 학력인정고, 일반/종합고의 전문계반(학과), 학생부 성적 체계가 다른 고교 졸업자 제외	○	○	×	×	×	3수생
고른 기회 대상자 (정원 내)	국가 보훈 대상자	2015년 2월 이후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로, 아래 항목 중 하나의 자격에 해당되는 자 1.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1항 제 3호~15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자녀 및 손/자녀 2. 고엽제 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에 해당하는 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의 자녀 3.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제 1호부터 3호에 의거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한 5.18 민주화 운동 공헌자 본인 및 자녀 4.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5. 보훈보상법 제2조 제1항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	○	○	×	×	3수생
고른 기회 대상자 (정원 내)	특성화 고교 졸업자	2015년 2월 이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단, 산업수요 맞춤형 마이스터고 제외,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종합고 포함) * 전문교과 30단위를 이수한 자 * 우리 대학이 지정하는 동일계 인정학과 기준을 만족하는 자	×	×	○	×	×	3수생

2) 학생부 위주(종합)

전형명 (대)	전형명 (대학 사용 명칭)	지원 자격	고교 구분					졸업생 가능 여부
			일반 고 / 자 율 고	특목 고	특성 학교	국외	검정 고 시 등 학 력 인 정	
일반 전형	열린 인재	2015년 2월 이후 이후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로 5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부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자	○	○	○	×	×	3수생
대학별 독자적 기준	대안 학교 출신자	2015년 2월 이후 교육부 지정 대안교육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우리 대학이 지정한 비인가 대안학교 졸업(예정)자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 -교육부 지정 대안교육 특성화 고등학교: 4학기(2년) 이상 수료(예정)하고, 해당 학교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우리 대학이 지정한 비인가 대안학교: 4학기(2년) 이상 이상 수료(예정)하고, 해당 학교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고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	○	×	○	3수생

*학생부 온라인 제출이 불가능한 비인가 대안학교는 졸업(예정)증명서, 인가서, 학교 소개서를 받아 보완함.

나. 수시 모집(정원 외)-학생부위주(교과)

전형명 (대)	전형명 (대학 사용 명칭)	지원 자격	고교 구분					졸업생 가능 여부
			일반 고/ 자율 고	특목 고	특성화 고	국외	검정 고시 등 학력 인정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정원외)	저소득층 (기회 균형 선발)	2015년 2월 이후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자녀 또는 아래 ①~⑥에 해당하는 자 및 자녀 ① 차상위 건강 보험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②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③ 차상위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대상자 ④ 차상위 자활급여 대상자 ⑤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대상자 ⑥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	○	○	×	○	3수생
농어촌 학생 (정원외)	농어촌 학생	2015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로 중1학년~고교입학에서 졸업까지 6년간(부모 거주)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 및 도서·벽지지역 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지역 일반 고교 졸업(예정)자(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지역이 동으로 변경 또는 도서·벽지지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해당 지역을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으로 인정) -검정고시출신자 및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 제외	○	×	×	×	×	3수생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정원외)	특성화 고교 졸업자	2015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단, 산업수요 맞춤형 마이스터고 제외,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종합고 포함) * 전문교과 30단위를 이수한 자 * 우리 대학이 지정하는 동일계 인정학과 기준을 만족하는 자	×	×	○	×	×	3수생
416 세월호 특별법	단원고 특별전형	2014.4.16.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학생으로 2016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다. 정시 모집(정원 내)-수능위주

전형명 (대)	전형명 (대학 사용 명칭)	지원 자격	고교 구분					졸업생 가능 여부
			일반 고	특목 고	특성 화고	국외	검정 고시 등 학력 인정	
일반 전형	일반 학생 (수능)	국내외 정규 고교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	○	○	○	○	○	○

*국내 정규 고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고등학교 구분)에 의한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 이다.

*검정고시 등 학력인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에 해당하는 학력기준을 가진 자이다. 끝.